어린이 보호구역 지정(확대) 고시

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『도로교통법』제12조 및 『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』제3조에 의거 어린이 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(확대) 고시합니다.

2023. 6. 9.



1. 관련근거

- 가. 「도로교통법」제12조(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)
- 나.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제3조 (보호구역의 지정)

2. 고시 내용

시 설 명	주 소	지정 목적	비고
군산금광초등학교	군산시 금광동 168번지 일원	어린이보호구역	확대

3. 보호구역 지정 관련 문의

-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 (☎063-454-3812)
- 4. 위치도 및 구간 : 붙임참조

【붙임】

[시설명 : 군산 금광초등학교]

